

교육대학원 학사 운영 내규

제6조(학기 중 학사운영)

② 출석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매 수업마다 출결 사항을 확인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2. 출석은 과제나 기타 프로젝트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3. 수업일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(미달)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.
4. 지각 및 조퇴의 누적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.
5.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 - 가. 친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
 - 부모, 배우자, 자녀: 7일
 - 형제자매, 조부모 및 외조부모: 3일
 - 4촌 이내 친척: 1일
 - 나. 병사관계(신체검사 등): 해당기간
 - 다.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: 교육대학원장이 확인한 기간
 - 라. 본인의 결혼: 7일
 - 마. 학교현장실습으로 인한 결석: 해당 기간
 - 바.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: 최대 2주간(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첨부)
 - 사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